

6 (第117回-運營第1次)

第117回 臨時會 議事日程案

會 期 : 2000. 2. 9(水) ~ 2. 21(月) 13日間
議事日程

日 時	附 議 案 件	備 考
2. 9(水) 14 : 00	* 開 會 式 1. 第117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.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3. 서울特別市議會定例會議運營에 관한條例案 4. 서울特別市會議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. 서울特別市議會交涉團體및委員會構成과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6. 서울特別市決算檢查委員選任및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7. 2000年度業務計劃報告의 件 -서울特別市 -서울特別市教育廳 *本會議 休會決議 : 2. 10~2. 20(11일간)	
2. 10(木) ~ 2. 20(日)	○委員會 活動	本會議 休 會
2. 21(月) 14 : 00	1. 案件處理	

*본 일정은 운영위원회와 각 대표의원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<p>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개최)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.</p> <p>제3조(회기)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.</p> <p>제4조(집회)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.</p> <p>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9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·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.</p> <p>제5조(심의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의회의규칙을 준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</p>
--	---